

학교법인 상명학원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인원	8인	1인

1. 일시: 2025년 2월 18일(화) 14:00(회의 소집 안내일: 2025년 2월 10일)

2. 장소: 상명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인원

- 이사 (8인): 유근혜, 이준방, 이영범, 윤태수, 유인수, 김종희, 김병주, 양용준

- 감사 (1인): 조향록

○ 불참 인원

- 이사 (1인): 김창영

- 감사 (1인): 유남규

4. 안건

1) 2024학년도 부속학교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2) 2025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3) 상명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건

4) 교원 임용에 관한 건

5) 부속여중 교장 및 교감직무대리 임용에 관한 건

6)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대학교 부담 승인에 관한 건

7) 대학교 예산전용 보고

8) 2025학년도 각급학교 운영 보고

9) 기타 안건

유근혜	김병주	양용준
-----	-----	-----

5. 회의 내용

의장은 금일 회의 소집에 대한 인사 말씀에 이어서 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말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신임 조항록 감사에게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에게 전회 회의록 낭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전회 회의록 전문을 낭독하다.

의장은 전회 회의록 낭독에 대한 누락 및 이상 유무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하다.

제1 안건 : 2024학년도 부속학교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을 설명토록하다.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은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2024학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액(세입·세출 각각)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제2회 추가경정	5,830,129,000원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제2회 추가경정	3,514,788,000원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제2회 추가경정	4,346,147,000원

의장은 부속학교의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김종희 상임이사의 동의와 양용준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 안건 : 2025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을 설명토록하다.

문종욱 간사는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2025학년도 법인 상근임원과 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을 포함한 일반업무회계 예산안과 수익사업회계예산안을 과목별로 설명하다.

2025학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세입·세출 각각)			
학교법인 상명학원	본예산	일반업무회계(고유목적)	938,000,000원
		수익사업회계	46,633,700,000원

상명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은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예산안을 설명하다.

2025학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세입·세출 각각)			
상명대학교	본예산	등록금회계	105,884,099,000원
		비등록금회계	59,227,519,000원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장 및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은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예산안을 설명하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세입·세출 각각)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본예산		4,857,229,000원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2,924,594,000원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3,849,494,000원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1,845,398,000원

유근래	김백주	양홍준
-----	-----	-----

의장은 법인 및 각급학교의 2025학년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이사진에게 의견을 묻다.

양용준 이사는 2025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의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말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유인수 이사는 동의에 재청하다

의장은 동의와 재청에 대하여 가부를 묻은 바 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과 같이 확정하고 승인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 안건: 상명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건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문종욱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상명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시행세칙 변경은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노동조합 임금인상분 지급 관련 소급 적용을 위한 1안과 전체 교직원 임금인상 소급 적용을 요청하는 2안, 두 가지로 심의 요청된 것임을 배부된 자료에 의해 설명하다.

김병주 이사는 본 안건을 상정하기까지 대학 내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과 이에 노조 상생 TF팀이 모여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다.

이준방 이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임금에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임을 말하다.

김종희 상임이사는 급여 체계 변화를 통해 전 구성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공정하고 정밀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수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대학이 지속 가능함을 설명하다.

윤태수 이사는 노조가 근무 환경이나 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조합원 당사자가 우리 대학에 채용 당시 동의했던 대학의 보수 규정에 반하여 차별적 급여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구성원 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음을 말하다.

이영범 이사는 강태범 전 이사장이 제1 노조와 체결한 협약은 이미 무효화 했으므로 그 협약대로 노조 조합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조합원에게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다.

김병주 이사는 그 협약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강태범 전 이사장이 단독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고 대내적으로 무효화 하였으나, 우리 이사회에서 대표로 선출했던 사람이 노조와 협약을 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는 조합원의 임금인상을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있을 것임을 말하며, 그 협약으로 인해 우리 대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직권 남용에 의한 배임 등으로 소 청구가 가능함을 부연하다.

유인수 이사는 강태범 전 이사장의 협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1안을 의결하여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동의한다며, 이번 안건 상정 과정에서 법인의 운영권 침해에 해당되는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에 우려를 표하다. 이번만 한시적으로 1안을 가결하고 2안의 내용은 이번 상반기에 체계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명하다.

의장은 대학에서 심의 요청한 두 가지 안 중 2안을 부결하고 1안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양용준 이사 동의와 김병주 이사의 재청으로 과반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4 안건: 교원 임용에 관한 건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원 임용 제청 사항을 설명하다.

유인수	김병주	양용준
-----	-----	-----

구분	소속	내용
교원 신규임용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1명, 천안캠퍼스 1명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미술 1명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수학 1명
교원 직무전환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임교원 (교육중점트랙 ⇒ 일반트랙) 1명.
교원 소속변경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임교원 9명
		천안캠퍼스 전임교원 15명
교원 면직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년퇴직 6명
		천안캠퍼스 정년퇴직 6명, 명예퇴직 1명, 임용기간 만료 1명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교원 1명(의원면직)
교원 파견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교원 2명(서울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의장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유인수 이사의 동의와 양용준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제5 안건: 부속여중 교장 및 교감직무대리 임용에 관한 건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상명대학교부속여자중학교 교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면직에 대하여 설명하다.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면직 일자	퇴직 사유	비고
상명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교장	황선택		2025.02.28.	명예퇴직	

양용준 이사는 황선택 교장의 면직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된 명예퇴직에 의한 것으로 위와 같이 면직하는 것에 동의하다.

김병주 이사는 동의에 재청하다.

의장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김종희 상임이사는 지난 이사회에서 서울시 교육청 교장 자격인정대상자로 추천한 바 있는 부속여자중학교 이돈숙 교감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의 후임 교장으로 임명(3년간: 2025.03.01. ~ 2028.02.29.까지)할 것을 동의하다.

소속	현 직위	성명	생년월일	교장 발령 일자	임용 기간	비고
상명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교감	이돈숙		2025.03.01.	2025.03.01.~ 2028.02.29.	

양용준 이사는 동의에 재청하다.

의장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문종욱 간사는 또한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교장으로부터 제청된 교감직무대리 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다.

소속	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교육 경력	담당 과목	교감직무대리 발령 일자
상명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교사	오성우		고려대학교 역사교육	19년 5월	역사	2025.03.01.

의장은 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윤태수 이사의 동의와 유인수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유인수	김병주	양용준
-----	-----	-----

제6 안건: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대학교 부담 승인에 관한 건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사학연금 및 퇴직수당 등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4년 12월 중 교육부에 2024학년도 사학연금 및 퇴직수당 법인부담금의 대학교 부담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검토 결과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8억 7천만원 이상이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전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학연금 및 퇴직수당 법인부담금은 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승인 요청하는 내용이었음을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다. 덧붙여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기준이 수정됨에 따라 2025학년도 법인 예산 편성 시 법인부담금 전출금 예산은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학교에서 부담하도록 2025학년도 중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김종희 상임이사는 교육부에 우리 법인이 8억 7천만원 이상 전출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최종 9억원의 법인부담금을 대학교로 전출하였음을 밝히고, 사학연금 및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전출 의무의 중요성 및 대학 경영에 있어 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의 준수를 강조하다. 다만 현재 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4학년도 사학연금 및 퇴직수당 예산편성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2025학년도의 법인부담금 예산은 수정된 평가 기준에 따라 3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동의하다.

김병주 이사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다.

의장은 동의와 재청에 대하여 가부를 묻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7 안건: 2024학년도 대학교 예산전용 보고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상명대학교 예산 전용(2024.11.01.~2025.01.31.)은 대학교 등록금회계 326,857,000원, 비등록금회계 343,449,000원을 과목별로 전용한 내용임을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다.

제8 안건: 2025학년도 각급학교 운영 보고

의장은 2025학년도 각급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각급학교 장에게 요구하다.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장은 전년도 운영 결과 및 2025학년도 학교 운영 목표와 발전계획 등을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다.

홍성태 총장은 상명대학교의 전년도 운영 결과 보고와 2025학년도 주요 정책 등을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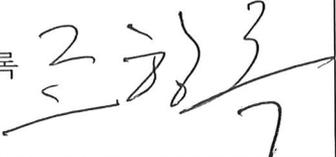
유근제	김병주	항응권
-----	-----	-----

제9 안건: 기타 안건

의장은 제3 안건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 후,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으로 본인과 양용준 이사, 김병주 이사로 제안하고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말한다.

위의 결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 서명 날인하다.

2025. 2. 18.

이사장	유근혜 	이사	김종희 
이사	이준방 	이사	김병주 
이사	이영범 	이사	양용준 
이사	윤태수 	감사	조항록 
이사	유인수 		

		
---	---	---